

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

노사협의회 현황

2026. 5. 22



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

노사협의회는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사용자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근로환경 개선, 조직발전,
고충 해결 등을 함께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

1 근로자측 구성 및 기능

- 근로자위원 대표 : 김현수
 - 근로자 측 의견 총괄 및 대표
 - 사용자 측과 공식 협의 진행
 - 정기·임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안건 제안
 - 근로자 의견 수렴 후 협의 안건화
 - 회의 결과 공유 및 이행 여부 점검
 - 근로조건·복지·안전·조직문화 개선 관련 대표 역할 수행

- 고충처리위원 : 장진석
 - 직원 고충 상담 및 접수
 - 직장 내 갈등·근무환경 문제 중재
 - 인사·업무·복무 관련 애로사항 청취
 - 괴롭힘·소통 문제 등 초기 조정 역할
 - 접수된 고충사항을 사용자 측과 협의
 - 처리 결과 안내 및 재발 방지 의견 제시

- 간사 : 공석
 -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 담당

- 회의 일정 조율 및 소집 지원
- 안건 취합 및 자료 작성
- 회의록 작성·보관
- 협의 결과 및 의결사항 관리
- 각 부서 의견 전달 및 행정 지원근무환경 개선

2 노사협의회 대표적 기능

- 근무환경 개선(현장 운영 개선)
-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협의(직원 안전)
- 복리후생 개선(복지 체계)
- 직원 고충 처리
-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
- 업무 효율 향상
- 경영 정보 공유
- 직원 의견 수렴(조직 소통 강화)
-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갈등 예방

3 협의회 운영 방법

- 회의
 - ① 정기회의: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로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임시회의: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• 회의소집

-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회를 주관한다.
-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• 정족수

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• 회의의 공개

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• 비밀 유지

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밀의 범위는매 회의에서 정한다.

• 회의록 비치

-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 1. 개최일시 및 장소
 2. 출석위원
 3.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
 4. 그 밖의 토의사항
-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해야 하며, 작성 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.

4 노사협의회 의결사항

-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
- 교육훈련 기본 계획 수립 후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
- 상조회 설립 추진 계획수립 후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